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발포폴리스틸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외견상 재활용의무 대상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혼합배출하고 있는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중 의복류, 종이제품 등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 제외 (안 제7조제3호마목 삭제)

1)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는 현재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재활용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포폴리스틸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의 재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그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제외함

3) 전기기기류 등의 제조업체의 제품 포장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발포폴리스틸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의 재활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나. 재활용의무 대상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4)

1)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국민이 외견상 재활용의무 대상인 것과 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대부분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혼합수거·처리하고 있음

2) 재활용의무 대상이 아닌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중 재활용의무 대상인 폐기물과 혼합배출되는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의복류, 종이제품 및 고무장갑의 포장재,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을 재활용의무 대상에 포함함

3)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대상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한편,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18조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8조제3호”를 “제18조제4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 비고란 3) 중 “제18조제4호”를 “제18조제5호”로, “제18조제5호”를 “제18조제6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마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4)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식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식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식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비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3.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5.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4호 및 제5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한다.
6.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7. 제10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소



포장과 법률

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p> <p>1.·2. (생략)</p> <p>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p> <p>가.~라. (생략)</p> <p>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p> <p>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p> <p>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는 제외한다.</p> <p>2. (생략)</p> <p>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한다)</p>	<p>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p> <p>_____.</p> <p>1.·2. (현행과 같음)</p> <p>3. _____</p> <p>가.~라.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_____</p> <p>_____.</p> <p>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_____.</p> <p>_____.</p> <p>2. (현행과 같음)</p> <p>제 18조 (재 활 용 의 무 대 상 제 품 · 포 장 재)</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p> <p>나. ~ 사.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p> <p>〈신설〉</p> <p>3. ~ 7. (생략)</p> <p>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제18조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제품·포장재</p> <p>2. ~ 4. (생략)</p>	<p>가. -----「식품위생법」 제14조</p> <p>-----</p> <p>-----</p> <p>-----</p> <p>-----</p> <p>-----</p> <p>나. ~ 사. (현행과 같음)</p> <p>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p> <p>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p> <p>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기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p> <p>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p> <p>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p> <p>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p> <p>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p> <p>-----</p> <p>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p> <p>2. ~ 4. (현행과 같음)</p>